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2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 김철민ㆍ이원욱ㆍ이정문

민형배 · 이해식 · 강선우

김민철 · 한병도 · 이용선

안호영 · 권칠승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뿐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현행법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갈수록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이렇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율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지역에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 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 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 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 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 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 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